| 국토교통부 | | 보도참고자료 | | 국민의 대접을 위한 정부하신 F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|
| | | 배포일시 | 2019. 4. 11.(목) 총 2 매(본문2) | 11112 |
| 담당 부서 | 항공기술과 | 담 당 자 | 자 과장 오성운, 사무관 원정윤, 주무관 박일훈 ·☎ (044) 201-4284, 4285 | |
| 보 도 일 시 | |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 | | |

국토부는 B737 맥스 도입 당시 항공안전법령에 따라 감항증명검사를 실시, 감항성 개선지시 이행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.

- □ 국토부는 B737 맥스 도입 당시 항공안전법령에 따라 감항증명검사를 실시, B737 항공기에 대한 감항성 개선지시 이행을 확인하였습니다.
 - 파이낸셜 뉴스(4.11) 등을 통해 홍철호 의원실에서 제기한 "국토부 가 B737 맥스 문제점을 알고 감항성 개선을 지시하고도 조치결과를 보고받지 않았다"는 사실과 다릅니다.
- □ 국토교통부는 '18년 12월 6일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B737 맥스 항공기에 대한 감항성 개선지시가 발행되어 이를 토대로 '18년 12월 11일 국적 항공사에게 개선을 지시하였으며,
 - * (개선지시서 주요내용) 비행중 강한 하강모드 작동, 속도, 고도계 이상메세지 가 조종석에 시현 시 즉시 자동비행을 수동모드로 전환하여 비행할 것, 맥스 운 항승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 내용과 교육실시 등
 - 이스타항공이 '18년 12월 19일과 29일 B737 맥스 2대의 도입 당시 항공안전법령에 따라 감항증명 검사('18.12.26~27, '19.1.4/1.7)를 실시 하면서 위의 감항성 개선지시 이행현황을 확인하였습니다.

- 당시 20여개 항목의 서류검사 및 항공계기 작동상태 등 90여개 항목에 대한 상태검사와 함께 조종사 대처요령 등 교육사항 충족 여부도 철저히 검토하여 도입을 허가 하였고,
- 도입 이후 항공기 운항 기간동안 항공안전감독관이 상시점검을 통해 항공기 정비상태, 조종사·정비사 교육훈련 등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.
- * (감항증명검사) 개별 항공기가 운항을 위해서 설계, 제작, 완성상태, 비행성능이 충족 되는지를 확인하여 비행 허용하는 제도(서류→상태검사→시험비행)
- □ 감항성 개선지시는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하면서 정비, 운항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 발생 시 항공기를 만든 제작사 소속 정부 에서 발행하는 제도로서,
 - '18.12월 FAA가 감항성개선지시를 발행했을 당시 이를 근거로 B737 맥스 항공기를 도입금지 또는 운항을 중단한 국가는 없었다는 사 실을 알려드립니다.

<관련 보도내용(파이낸셜뉴스, 아주경제 등, 4.11) >

- ◈ 국토부, 보잉 737 도입전 추락원인 센서결함 이미 알고 있었다.
 - 추락사고 원인인 AOA 센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감항성 개선을 지시하고도 이스타항공으로부터 조치결과 등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원정윤 사무관(☎ 044-201-428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